

# 검 토 보 고 서

안 건 명	부서명	페이지
1.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	총무과	1
2.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		4

( 2012. 5. 17 )

**마포구의회 행정건설위원회**

**[ 전문위원 명 금 길 ]**

## **1. 안 건 명**

가.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## **2. 제출일자 및 제출자**

가. 제출일자 : 2012년 5월 8일

나. 제 출 자 : 마포구청장

## **3. 의안 회부일자**

가. 2012년 5월 11일

나. 의안번호 : 12-27

## **4. 관련근거**

가. 「공무원 여비 규정」 제18조제1항

나.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」 제4조

## [검토보고]

#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동 일부개정조례안은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」이 제정됨에 따라 조례상에서 「공무원여비 규정」을 준용하도록 규정한 조항에 위 규칙을 삽입하고,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따로 정하도록 하여 공용차량을 사용하여 출장 시에 여비 지급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된 것임.

## <주요내용>

1. 안 제5조(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)제4호에서는 “ ‘ 「공용차량관리 규정」 제4조 및 같은 규정 별표 1에 의한’ 은 없는 것으로 본다” 를 “ ‘ 「공용차량관리규정」 제4조 및 별표 1은’ ‘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용차량 관리규칙」 제4조 및 별표 1로’ 본다” 로 개정함.
2. 안 제6조(시행규칙)에서는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함.
3. 그 밖에 전체적으로 맞춤법, 띄어쓰기 등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정비함.

## [검토의견]

동 조례안은 조례상에서 「공무원 여비 규정」을 준용하도록 규정한 조항에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」의 내용을 삽입하여 공용차량을 사용하여 출장할 때 여비 지급 및 이에 따른 시행규칙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였으며,

법조문을 어문 규범에 맞게 전체적으로 용어를 알기 쉽게 순화하였으며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우리 구 조례규칙심의회와 입법예고 등을 거쳐 절차상에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.